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71

발의연월일: 2025. 2. 19.

발 의 자: 김문수 · 이광희 · 이병진

이재관 • 문금주 • 조계원

양문석 · 강준현 · 김승원

허성무 · 안태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개인방송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 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 더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를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제70조(벌칙) 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u>	1억
<u>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원</u>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	②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u>10억원</u>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몰수·추정) <u>제72조제1</u>	제75조의2(몰수·추징) <u>제70조제1</u>
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	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1항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제2호 및 제73조제7호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	
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	
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